



기획재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19년 3 / 4 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

1.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귀 부(처?청?시?도)가 추천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지정(재지정)하오니 해당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추후 주무관청은 첨부된 "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신청방법"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2019.9.30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결과가 고시될 예정입니다.

붙임 1. 2019년 3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.

2. 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방법(사단,재단,사회적협동조합,공공기관) 1부.
끝.

기획재정부장관



수신자 경기도청외 170곳

